

#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09
----------	-----

제출년월일 : 2001년 4월 30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촌용수의 종합이용계획을 수립·추진하므로서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함(안 제3조)
- 나. 농촌용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과 수질검사를 실시함(안 제6조)
- 라.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제 제9조)
- 마.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18조)
- 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함(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결과사본 : 덧붙임

##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 관리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종류 :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평창군위원회”라 한다)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가. 기타 평창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 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평창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과 용수구역내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평창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기반조성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자체위원회 : 반기 1회

2. 평창군위원회 : 년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평창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약을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농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제18조의2(농촌용수계획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등을 위하여 농어촌 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합리적인 이용 및 그 수질의 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설정을 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업기반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용수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사항
5.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용수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3(농어촌용수구역)**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 기타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모전에 관한 사항

**제21조의4(용수계획의 시행)**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조례의 제정)**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중 2개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18조의2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의 고시

## □ 부 칙

**제3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